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지방공기업법」(2009. 4. 1), 동법 시행령(2009.9.21) 및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09.9)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 나. 법인의 명칭을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미시설공단으로 변경함(안 제1조)
- 다. 임원의 정원을 구미시설공단의 정관에 위임(안 제7조)
- 라.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개정
- (1) 임원의 연임은 1년 단위로 함(안 제7조의2)
 - (2) 임원의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임명(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3) 공단에 임원의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둠(안 제18조)

- 현행 이사장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의 내규에 위임
- (4)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9조)
 - 시설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
- (5)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했다(안 제15조)
- 마.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운영을 공단의 사업범위에 포함
(안 제25조)
- 바. 공단 자체사업 가능 규정 신설(안 제25조)
- 사. 「구미원예수출공사설치조례」 및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
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는 공사변경등기일부터 폐지(부칙 제3조)
- 아. 재산의 승계(부칙 제4조)
 - 공사의 재산은 공사 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공단에 승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공기업법」 제58조부터 59조까지, 제76조, 제78조의2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63조, 제7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선산출장소 농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1973(2010.45)]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으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을 “구미시설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억원”을 “7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중 “정하되 이사의 수는 9인 이내로 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금치산자”를 “미성년자, 금치산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제1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운영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제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단이 제25조에 규정한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 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 으로, 제26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편성되어야 한다” 를 “편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종료후 2월”을 “종료 후 2개월”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8조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을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공단은 변경등기일부터 구미원예수출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원예수출공사설치조례와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는 공사변경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

제4조(재산의 승인) 공단은 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공사의 재산가액은 공사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시장의 승인은 공사 재산을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의 승계에 필요한 부속서류

제5조(예산승인) 공단은 변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u>	<u>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기업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구미시시설관리공단</u>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공기업법</u> 」----- 제76조제1항에 따라 <u>구미시설공단</u> ----- ----- ----- ----- ----- -----.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u>20억원</u> 으로 하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액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 -- <u>70억원</u> ----- ----- -----.
②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 ----- -----.

1. ~ 12.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제7조(임원)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9인 이내로 한다.

<신설>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

정한다.

제7조의2(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②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신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이사장 1인
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유고시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
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이사
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
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
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
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
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
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이사는 시 정책기획실장, 경제
통상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임기
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
사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하
되 의회와 협의하여 추천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시장이 임
· 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연임할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시 감
사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
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
로 한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
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
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
당하는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

-.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생략)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4. (생략)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생략)

제15조(이사회) ① · ② (생략)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④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3. · 4. (현행과 같음)

5. 「지방공기업법」-----

6.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⑤ (생 략)

제3장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18조(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시장은 법제58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시에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신 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인으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

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삭 제>

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
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
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
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제21조(위원회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삭 제>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삭 제>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시의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이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

<삭 제>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
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한 2인 이상을 추천하
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 추천대
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
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
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
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
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
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에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이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삭 제>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신설>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공단이 제25조에 규정한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위탁수수료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 (이하 “영”이라 한

제25조(사업)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운영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②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단이 제25조에 규정한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 하여 정하되 시장의

다)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
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
어 정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금고
에 당일 불입하여야 한다.

제27조(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
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경영평가
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
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
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
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25조에 따른 -----

-----.

⑥ ----- 제3항에 따라 ----

-----.

제27조(경영평가) ① -----

----- 1회 이상 -----

-----.

② 제1항에 따른-----

-----.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의 개시 40
일전까지 편성되어야 한다.

②~⑤ (생략)

제31조(결산) ①공단은 매사업년
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
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
다.

②·③ (생략)

제4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시장
은 공단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소속직원을 공
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업무를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
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
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을 적용
한다.

-----편성하여야 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결산) ① -----

---종료 후 2개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

----- 범위 내에서 한시적
으로 -----
-----.

② 제1항에 따라 -----

따라-----
---.

제48조(타법령의 적용)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
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법 시행규칙」-----.

관 련 법 령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개정 2006.10.4>)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2009.4.1>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1.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②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신설 2009.4.1>

③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2009.4.1>

[본조신설 1980·1·4]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9.4.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3.25]

제75조의3 (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2.12.8]

제76조 (설립·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②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제57조 내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3.25> [본조신설 1980·1·4]

제78조의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 후 1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다. 삭제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본조신설 2007.3.9]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정 2009.9.21>)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9.21>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1>

[본조신설 2002.6.19]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1]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 (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체"로 본다.
<개정 2002.6.19, 2007.3.9, 2009.9.21>

제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